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2218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영훈, 기철, 박정수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의 2017. 6. 6.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B는 16/110 지분, 피고 C은 4/110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E, D, F 사이에 2016. 12. 7.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2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B는 8/10, 피고 C은 2/10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E, D, F 사이에 2016. 12. 7.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는 87,643,915원, 피고 C은 21,910,979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9049)을 제기하여,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62,716원과 그 중 55,586,142원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인 망 G은 2016.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E, D, F, 피고 C이 있다(상속지분 피고 B 3/11,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1).

다. 피고들과 D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7. 6. 6. 망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8/10 지분을, 피고 C이 2/10 지분을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7. 6. 19.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1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1 내지 6, 을1, 2, 6, 7(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관해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그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피고 B가 남편인 망 G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승소한 판결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부분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피고 B 8/10 지분, 피고 C 2/10 지분)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 이외에 피고들과 E, F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²⁾, 원고가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³⁾.), 그 원상회복으로 위 해당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⁴⁾.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 대 31.7㎡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상 세멘트블록조 평옥개 2계건
 점포1동
 전평25평7홉5작
 외2개평31평2홉8작
 내건평6평2홉5작
 외2계평7평8홉7작

1) 원고는 2016. 12. 7.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등기원인 날짜로 기재함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임)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므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2017. 6. 6.자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착오에 의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데, 그 청구에는 채무자인 D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의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므로 D에게 말소해야 한다.